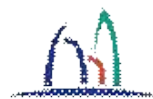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주·야간보호]

2026년도



구립서초데이케어센터

■ 계약목적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개시 전에 기관은 이용자나 보호자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을 체결한다.

■ 계약기간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 다만, 기관과 이용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할 수 있다.

■ 서비스의 내용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장기요양서비스는 다음과 같으며, 이용자의 상태 및 욕구에 따라 변동 될 수 있다.

- 가. 신체활동지원
- 나. 일상생활지원
- 다. 정서지원
- 라. 인지활동지원
- 마. 여가활동지원
- 바, 간호 및 기능회복지원
- 사. 지역자원 연계

■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가. 월 한도액

등급	월 한도액(원)	본인부담금(원)			기초생활 수급권자
		일반	감경		
			15%	9%	
1등급	2,512,900	376,935	226,161	150,774	면제
2등급	2,331,200	349,680	209,808	139,872	
3등급	1,528,200	229,230	137,538	91,692	
4등급	1,409,700	211,455	126,873	84,582	
5등급	1,208,900	181,335	108,801	72,534	
인지지원등급	676,320	101,448	60,868	40,579	

- 1) 장기요양등급별로 한달(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동안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있는 월한도 금액으로 주·야간보호,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를 이용하는 경우 적용된다.
- 2) 장기요양등급별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이용하여야 하며, 월 한도액을 초과한 비용은 이용자가 전부 부담한다.
- 3) 재가급여는 일반 대상자의 경우에는 이용한 급여비용의 15%를 본인이 부담하고, 40% 감경 대상자는 이용한 급여비용의 9%를, 60% 감경대상자는 이용한 급여비용의 6%를 부담하고 기초생활수급권자는 본인부담이 면제된다.
- 4) 18시 이후 22시 이전에 급여를 제공한 경우 급여비용의 20%를 가산한다.
- 5) 공휴일에 급여를 제공한 경우 급여비용의 30%를 가산한다.

나. 주·야간보호 이용시간별 급여비용(원)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3시간이상-6시간미만	41,820	38,720	35,740	34,120	32,490	32,490
6시간이상-8시간미만	56,060	51,930	47,940	46,300	44,650	44,650
8시간이상-10시간미만	69,730	64,590	59,640	58,010	56,360	56,360
10시간이상-13시간이하	76,820	71,160	65,750	64,090	62,460	56,360
13시간 초과	82,370	76,310	70,500	68,860	67,240	56,360

다. 치매전담실 이용시간별 급여비용(원)

구분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3시간이상-6시간미만	48,700	44,960	42,910	40,850	40,850
6시간이상-8시간미만	65,320	60,290	58,260	56,170	56,170
8시간이상-10시간미만	81,270	75,010	72,980	70,890	70,890
10시간이상-13시간이하	89,530	82,700	80,600	78,550	70,890
13시간 초과	95,980	88,700	86,620	84,570	70,890

라. 비급여 항목

식사비용은 1회 5,000원, 간식비용은 1회 2,000원이며 이용자가 전액 부담한다.

■ 신원인수의 권리 및 의무

- 가. 이용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 나. 기관이 실시하는 만족도 조사,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 질을 평가하고, 결과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다. 이용자에 관한 건강정보 등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
- 라. 이용자의 이용료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할 의무
- 마. 이용자의 주소 등 변동내용을 즉시 통보할 의무
- 바. 보호자가 변경된 경우 통보할 의무
- 사. 그 밖에 기관 이용과 관련된 규칙 등 이행의 의무

■ 계약의 해제

- 가. 이용자나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해지하고자 하거나, 그 계약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 예정일 15일전까지 퇴소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나. 기관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1) 다른 이용자의 인권과 안전에 심대한 위협이 될 때
 - 2) 이용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한 때